

보존처리계획 승인서

(앞쪽)

승인 제	-	호
승인 받는 자	성명 또는 법인명	
	주소	
대상 문화유산	명칭	
	종류	수량
	소재지	
승인사항	승인 내용	
	승인 조건	

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4제2항, 「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3항 및 「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유산청장
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)

직인

행정사항

1. 이 승인서에 따른 승인은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.
2.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5제2항제1호, 「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 및 「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.
3.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5제2항제2호·제3호 및 「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.
4.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,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.